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최근 도시화·산업화·가족제도 변화 등으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, 장사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화장시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·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임
- 구미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의 장례비용 부담 상승, 매장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매년 화장 수요가 늘고 있으나,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구미시민을 위한 현대식의 쾌적한 화장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
- 구미 시립화장장 입지선정 대상지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화장시설을 계획(결정)하여 주민들의 화장 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화장 문화 조성을 위함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－ 보건위생시설(화장시설)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화장시설	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산77-1번지 일원	－	증)111,854	111,854		

·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1	화장시설	화장시설 신설 A = 111,854㎡	·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, 구미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으로 현대식의 쾌적한 화장시설의 건립이 절실 히 요구되어 옥성면 농소리 산77-1번지 일원 에 화장시설을 신설함

－ 교통시설(도로)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2	180	17 ~ 23.5	집산 도로	805	중로1-72 농소리 1031-3	농소리 1011	일반 도로			

·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－	중로 2-180	· 도로신설 · 폭원 : 17m ~ 23.5m · 연장 : 805m	화장시설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결정

4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‘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’의 건은,
 -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, 구미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현대식의 쾌적한 화장시설의 건립을 절실히 요구받아 옥성면 농소리 일원에 화장시설을 조성코자 보건위생시설(화장시설) 결정을 받으려는 것임
 - 본 시립화장시설은 신규로 건립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,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, 화장 문화의 정착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인 화장장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.